

	요건 사항		사항
Performance Standard (P.S) Ver. 2 Dec. 2017	Governance (관리방식)	Business Integrity	법규 준수 및 부정부패 없이 운영
		Policy and Management	환경, 사회적 관리
		Transparency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고 (Reporting) 체계 구축
		Material Stewardship	알루미늄의 자원 효율성,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
	Environment (환경)	Green house gas Emission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Emission, Effluents, And Waste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배출 및 유출물을 최소화 하고 폐기물 저감 계획 수립
		Water Stewardship	수자원 관리를 위해 책임감있게 물을 사용하며 관리
		Biodiversity	생태계, 서식지 및 종(Species) 보호 및 관리
	Social (사회적인)	Human Rights	개인 및 단체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원
		Labor Rights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엄과 존중으로 대우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모든 근로자와 계약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제공	

ASI Performance Standard(P.S) 항목별 세부사항 - Governance (관리방식)

요건사항 / 주관부서	원칙	세부원칙
Business Integrity (기업의 공정성) : 준법경영팀	기업은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1.1 법률 준수 : 적용 법률을 인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 1.2 반부패 : 적용 법률 및 국제 표준에 따라 강탈, 뇌물 수수 등의 모든 부패 행위 금지 1.3 행동 강령 : 환경, 사회, 관리 방식 성과와 관련된 원칙을 포함하는 행동 강령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의 실행
Policy and Management (방침 및 관리) : 기획, 구매, 생산, 안전기술경영팀	기업은 환경, 사회 및 관리 프로세스의 올바른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2.1 환경, 사회, 관리 방침 a. 본 표준에 포함된 환경, 사회, 관리방식의 관행에 따라 통합 또는 독립 실행형 방침을 실행 하고 유지 관리해야 함. b. 고위 경영진이 방침에 날인 하고, 지원하며, 정기적으로 리뷰함. c. 방침을 내부적, 외부적으로 적절하게 의사소통 해야 함. 2.2 리더십 : 인증시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고위 경영진을 지명해야 함. (적어도 1명 이상) 2.3 환경 및 사회 경영 시스템 조직은 다음에 대해 통합 또는 개별 시스템을 문서화하고 실행하여야 함. a. 환경 관리 시스템의 통합 또는 개별 문서화 b. 사회 관리 시스템의 통합 및 개별 문서화 문서화 2.4 책임감 있는 구매 : 환경, 사회, 및 관리 문제를 다루는 책임감 있는 구매 방침의 실행해야 함. 2.5 영향 평가 :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기존 시설의 주요 변경에 대해 성별 분석을 포함하여 환경, 사회, 문화 및 인권 영향 평가를 수행 2.6 비상 대응 계획 : 지역사회, 근로자, 대리인 및 연관된 기관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 관계자 그룹과 협력하여 현장별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 및 개발해야 함. 2.7 인수합병 : 인수 및 합병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환경, 사회 및 관리 방식의 문제를 검토해야 함. 2.8 폐쇄, 해체, 매각 : 폐쇄, 해체 및 매각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환경, 사회, 관리 방식 문제를 검토해야 함.
Transparency (투명성) : 준법경영팀, 기획	기업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고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3.1 지속 가능성 보고 : 지배 구조 접근법과 그 중요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공개적으로 공개 해야 함. 3.2 미준수 및 법적책임 :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벌금, 판결, 처벌 등의 제재사항을 공개해야 함 3.3 정부 세금 : a. 기업은 법적 혹은 계약에 의거하여 정부에 세금을 납부 해야함. b. 보크사이트(Bauxite) 채광기업은 정부에 납부한 지불내역을 심사 또는 보증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함: 당사해당없음 3.4 이해 관계자 불만, 고충 및 정보요청 : 이해 관계자의 불만사항, 고충사항 및 운영 관련 정보 요청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해결방법을 실행해야 하며, 이는 접근하기 쉽고,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문화적, 성별적 사항을 고려해야 함.
Material Stewardship (자재 관리) : 알루미늄 생산팀	기업은 알루미늄의 자원 효율성,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수명주기 관점 및 가치사슬 고려)	4.1 환경 수명주기 평가 (Life Cycle Assessment) a. 알루미늄이 사용되는 주요 제품 라인의 수명주기에 대한 영향을 평가 b.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알루미늄(포함) 제품에 대한 시작부터 공장 입고(원료채취에서 제조전)까지의 수명주기 평가 정보를 제공해야 함 c. 외부와 의사소통시, 시스템 영역, 추정치를 포함하여 수명주기 평가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4.2 제품 디자인 : 최종 제품의 환경 수명 주기 영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품 또는 구성 요소의 디자인 및 개발 프로세스에서 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포함해야 함. 4.3 알루미늄 공정 스크랩 a. 자체 공정 내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시에는 회수, 재활용 및/또는 재사용을 100% 목표로 함. b. 재활용을 위해 Alloy 및 등급을 분류함 (보크사이트 채광 및 알루미늄 제련에는 해당없음) 4.4 수명이 다한 제품의 수집 및 재활용 a. 특정 일정, 활동 및 목표를 포함하는 재활용 전략을 실행해야 함 b. 알루미늄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해당 시장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확한 측정 및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또는 국가의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본 요구사항은 알루미늄 포함제품이 LCA에 기초하여 원자재 재활용이 환

ASI Performance Standard(P.S) 항목별 세부사항 - Environment (환경)

요건사항	원칙	세부원칙
Greenhouse Gas Emissions (온실가스 배출량) : 안전기술경영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서 수립된 궁극적인 목적을 인식하고,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명주기 관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5.1 온실 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의 공개 : 기업은 연간 온실 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대외 공개해야 함. 5.2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 : 기업은 온실 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기한이 포함된 목표를 공표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 목표는 온실 가스 배출의 직접 및 간접 배출원을 포함해야 함. 5.3 알루미늄 제련 (알루미늄 제련기업에 해당. 당사 관련없음)
Emissions, Effluents and Waste (배출물, 오수, 폐기물) : 안전기술경영팀, 알루미늄 생산팀	기업은 인류의 건강과 안전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최소화하고 *Waste Mitigation Hierarchy에 따라 폐기물을 관리해야 함. *Waste Mitigation Hierarchy: 폐기물 감축 체계 (가이드스 116페이지 참조) 1. 회피 (예방 및 절감 포함) 2. 재사용, 재활용, 재가공 3. 친환경적 처분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NSW 및 EU Waste Framework Directive 기초.	6.1 대기 배출 : 기업은 인류 또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기 배출을 정량화하여 보고해야 하며 대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함. 6.2 오폐수 배출 : 기업은 인간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배출량을 정량화하여 보고해야 하며,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야 함. 6.3 유출 및 누출의 평가 및 관리 a. 기업은 공기, 물,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주요 유출/누출 위험 영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함. b. 평가 완료 후, 기업은 유출 및 누출을 예방하고 발견하기 위한 관리, 외부 의사소통 계획, 적합성 관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함. 6.4 오염 유출 보고 a. 기업은 오염 유출사고 발생시 유출량, 유형 및 잠재적 영향등을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함. b. 기업은 오염 유출에 대한 영향 평가 및 취했던 시정 조치를 매년 대외 보고해야 함. 6.5 폐기물 관리 및 보고 a. 기업은 Waste Mitigation Hierarchy에 따라 설계된 폐기물 관리 전략을 실행해야 함. b. 기업은 유해 및 일반 폐기물의 양과 관련 폐기물 처분 방법을 매년 공개해야 함. 6.6 보크사이트 잔류물 : 알루미늄 제련을 하는 기업에 해당. 당사 관련없음 6.7 알루미늄 제련 폐기물 : 알루미늄 제련기업에 해당. 당사 관련없음 6.8 알루미늄 재용해/정제 : 알루미늄 재용해, 정제 또는 casting 기업 해당. 당사 관련없음
Water Stewardship (수자원 관리) : 안전기술경영팀, 알루미늄 생산팀	기업은 수자원 관리를 위해 책임감 있게 물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함.	7.1 수질 평가 a. 배수 및 물 사용을 출처와 유형별로 확인 및 계획 해야 함. b. 기업 관련 지역의 수질 관련 위험 평가를 실행해야 함. 7.2 물 관리 a. 기업은 7.1항에서 확인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계획(기한이 있는 목표 포함)을 실행해야 함. b. 기업은 계획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해야 함. 7.3 물 사용 및 위험요소에 대한 공개 : 기업은 배수 보고 및 물 관련 위험요소를 공개해야 함.
Biodiversity (생물의 다양성) : 안전기술경영팀, 알루미늄 생산팀	기업은 생태계, 서식지 및 종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 다양성 영향을 고려해야 함.	8.1 생물 다양성 평가 : 기업은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험성을 토지 이용 및 기업 관련 구역 내 활동을 기반으로 평가해야 함. 8.2 생물 다양성 관리 : a. 조직은 중요한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기한이 포함된 목표와 함께 생물다양성계획을 실행하고 효과성을 모니터링해야함. b. 생물다양성계획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생물다양성 감축체계에 부합하여 개발되어야 함. c. 달성된 생물다양성 결과물은 이해당사자와 의사소통되어야 하며, 대외 공개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함. 8.3 외래종 : 생물 다양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래종 유입을 사전에 방지해야 함. 8.4. 세계 문화유산 접근 금지(보크사이트 채광 관련한 기업 해당) : 당사 관련없음 8.5. 광산 재건 (보크사이트 채광 관련 기업 해당) : 당사 관련없음

ASI Performance Standard(P.S) 항목별 세부사항 - Social (사회)

요건사항	원칙	세부원칙
<p>Human Rights (인권) : 인사전략팀, 준법경영팀</p>	<p>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받는 개인 및 단체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함. 또한, 기업은 인권에 관한 국제적 문서와 부합되는 방식으로 인권에 대한 악영향을 평가,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9.1. 인권 실사 :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규모와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기업 및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을 준수해야 함. 또한, 다음 하기 건을 최소한 포함하여야 함.</p> <p>a. 인권 존중에 대한 방침. b. 인권 실사 프로세스(Human Rights Due Diligence Process): 인권에 대해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 및 예방, 개선하는 과정 c. 기업이 인권 유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 방안을 제공하거나 협조해야 함 (원주민이 있는 경우, 9.4항 적용될 수 있음). 9.2. 여성 인권 : 기업은 유엔 여성차별 철폐 협약 (CEDAW)을 포함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여성의 권리 및 이익에 대해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이행해야 함. 9.3. 토착민 (원주민 또는 원주민의 토지, 자원이 있는 경우 적용): 당사 관련없음 9.4. 토착민의 사전 고지에 입각한 동의 (원주민 또는 원주민의 토지, 자원이 있는 경우 적용): : 당사 관련 없음 9.5. 문화 유산 : 조직은 지역공동체와 협의하여, 협동적으로 회사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내 문화유산을 파악하고, 영향에 대해 조치하고, 해당 가치에 대해 지속적인 접근 권한을 보장해야 함. 9.6. 이주 재정착 : 당사 관련없음 9.7. 지역 사회 a. 지역 사회의 토지와 생계 수단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합법적이고 관습적인 권리와 이익 및 천연 자원의 사용을 존중함. b.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생계 수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c. 지역 사회와 함께 생계 수단을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함. (본 요구사항들은 9.1항의 인권듀딜리전스 실행이후 파악된 지역사회 관련 이슈에 대해 적용됨) 9.8. 분쟁 및 고위험 지역 : 분쟁 및 고위험 지역에서 무력 충돌이나 인권 유린에 관여하지 말아야 함. 9.9. 보안관련 관행 (Security Practice) : 공인된 기준과 올바른 관행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공적 및 사적 보안 업체와 관계 유지</p>
<p>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직업 보건 및 안전) : 안전기술경영팀, 알미늄 생산팀</p>	<p>기업은 모든 직원(계약 근로자 포함)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p> <p>* ILO : 국제 노동 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p>	<p>11.1. 산업 안전 및 보건 방침 a. 임원진이 날인한 산업 안전보건 방침을 실행하고, 의사소통하며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지원되어야 함. b. 기업의 통제하에 있는 구역 및 활동과 연관 있는 모든 근로자 및 방문자에 적용되어야 함. c. ILO 협약 155 및 176을 포함하여 산업 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 및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국제 표준에 관한 적용 가능한 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방침에 포함. d. 작업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위험 및 안전 관행을 이해하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방침을 포함시켜야 함. 11.2. 산업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 적용 가능한 국내 및 국제 표준을 부합하는 문서화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3. 안전보건에 관한 임직원 참여 : 조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이,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한 이슈를 경영진에게 제기하고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4. 산업안전보건 성과 : 선행 및 후행 지표를 사용하여 산업 보건 및 안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동종 및 모범 사례와 비교하고, 해당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p>

ASI Performance Standard(P.S) 항목별 세부사항 - Social (사회)

요건사항	원칙	세부원칙
<p>Labor Rights (노동 권리) : 인사전략팀, 준법경영팀</p>	<p>기업은 ILO 핵심 및 기타 협약에 따라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p>	<p>10.1.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a. ILO 협약 C87 및 C89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 조합에 가입하고, 대표자를 선출하고, 간섭없이 노동자 협의회에 가입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함. b. 기업은 단체 교섭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단체 교섭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며 단체 교섭 협약을 준수함. c. 적용되는 법률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의 기업은 대안 수단을 찾아 지원해야 함.</p> <p>10.2. 아동 노동 : ILO 협약 C138 및 C132에 따라 아동 노동을 금지하며 관련 국내법 및 국제법을 준수해야 함. a. 기본 최소 근로 연령 15세 b. 위험한 미성년 노동에 연관되거나 지원하지 않음 c. 최악의 형태의 미성년 노동에 연관되거나 지원하지 않음</p> <p>10.3. 강제 노동 : ILO 협약 C29(의정서 P29(2014)) 및 C105에 따라 강제 노동에 연관되거나 이를 지원하는 행위 금지함 a. 직접 또는 모집 기관을 통한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금지 b. 어떠한 형태의 예치금, 채용 비용 등 채용대행업체 또는 직접 요구 금지 c. 이주 노동자로부터 숙박 예치금 또는 보안 관련 비용 청구 금지 d. 부채 상환을 위해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아야 함 e. 직장 또는 주거지의 자유 이동을 제한하지 않아야 함 f. 근로자의 신분 증명서, 취업 허가증, 여행 서류 또는 훈련 증명서 원본을 보관하지 않음. g. 일정 기간의 사전 통보시, 근로자는 불이익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음.</p> <p>10.4. 차별금지 : ILO 협약 C100 및 C111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성별, 인종, 민족, 사회적 출신, 종교, 장애, 정치적 제휴, 연령, 출신 국가, 성적 취향, 결혼 상태 등의 차별에 연관되거나 이를 지원해서는 안됨.</p> <p>10.5. 의사소통 및 참여 : 보복, 협박 또는 괴롭힘의 위험이 없는 근로 조건 및 보상 문제 해결에 관한 개방된 의사 소통을 보장하고 근로자 및 그 대리인과 직접 접촉해야 함.</p> <p>10.6. 징계 관행 :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성희롱, 언어 폭력 금지</p> <p>10.7. 성과 보수 a. 임금은 항상 최소 법적 또는 업계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적인 필요 및 약간의 부수적인 수입을 제공하여야 함. b. 임금은 적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명세서는 문서화되어야 함</p> <p>10.8. 근무 시간 : 근로시간(초과 근로 시간 포함), 공휴일 및 유급 연차에 관한 적용 가능한 법과 산업 표준을 준수해야 함.</p>